

-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0. 5.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여성가족과]

제안 설명서

설 명 자: 여성가족과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 국민과 공무원 등이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8. 9. 28.에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규정에 맞도록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의 조항 신설을 통하여 성별영향평가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안 제1조~제9조,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였고,
- 안 제7조에서는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11조에서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사항으로

- 본 조례안을 2020년 4월 13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 2020년 5월 25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 별도로 소요되는 비용이 없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규정에 맞도록 조례의 용어를 개정하고 성별영향평가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특정성별영향평가 조항 및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 하였으니
-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0082035 |
|----------|---------|

제출년월일: 2020. 5. 28.
제 출 자: 달서구청장
(여성가족과장)

1. 제안이유

- 국민과 공무원 등이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8. 9. 28.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규정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조례의 조항 신설을 통하여 성별영향평가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명칭 변경
(안 제1조~제9조,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
-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근거 규정 신설(안 제7조)
-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 (안 제12조)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성별영향평가법」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4. 13.~5. 4.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비해당

4)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5)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원안 동의

6)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분석평가의 실시”를 “성별영향평가의 실시”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분석평가 대상)”을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분석평가의 시기)”를 “(성별영향평가의 시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분석평가서의 작성)”을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같은 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서”를 각각 “성별영향평가서”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분석평가결과의 반영)”을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장의 제목 “분석평가의 지원체계”를 “성별영향평가의 지원체계”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7조)의 제목 “(분석평가 교육)”을 “(성별영향평가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 교육(이하 “분석평가 교육”이라 한다)”을 “성별영향평가 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8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분석평가결과”를 “성별영향평가결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에 관한 사항

제10조(중전의 제9조)제3항제3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중전의 제13조)제2항 중 “분석평가업무”를 “성별영향평가업무”로 한다.

제17조(중전의 제15조)의 제목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를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석평가업무”를 “성별영향평가업무”로 하며, 같은 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책임관”을 각각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서”를 “성별영향평가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분석평가결과”를 “성별영향평가결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8조(중전의 제16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원)”을 “(성별영향평가기관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을 “성별영향평가기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28조제3항제4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 개 정 안 |
|--|--|
| <p><u>대구광역시달서구</u> <u>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성별영향분석평가법</u>」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정책에 대한 <u>성별영향분석평가</u>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u>성별영향분석평가</u>(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u>분석평가</u>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u>분석평가의 실시</u></p> <p>제3조(<u>분석평가 대상</u>) ① 구청장은 「<u>성별영향분석평가법</u>」(이</p> | <p><u>대구광역시달서구</u> <u>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성별영향평가법</u>」----- ----- <u>성별영향평가</u> -----</p> <p>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 ----- <u>성별영향평가</u>-----</p> <p>② ----- <u>성별영향평가</u>-----</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u>성별영향평가의 실시</u></p> <p>제3조(<u>성별영향평가 대상</u>) ① --- --- 「<u>성별영향평가법</u>」 -----</p> |

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 4.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분석평가의 시기)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 성별영향평가 -----

1. ~ 4.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

-- 성별영향평가 -----

제4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

----- 성별영향평가 -----

1. ~ 3. (생략)

제5조(분석평가서의 작성) ① 구청장은 분석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분석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제6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제3장 분석평가의 지원체계

제7조(분석평가 교육) ①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① ----- 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서-----.

② ----- 성별영향평가서-----

-----.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 성별영향평가-----

-----.

제7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성별영향평가의 지원체계

제8조(성별영향평가 교육) ① ---
--- 성별영향평가 -----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이하 "분석평가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분석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신 설>

4. (생략)

----- 성별영향평가
교육-----
-----.

② ----- 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 -----
-----.

제9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 성별영향
평가 -----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

② -----

1. ----- 성별영향
평가-----

2. 성별영향평가결과-----

3. 성별영향평가-----

4.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
영향평가 대상에 관한 사항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9조(구성) ①·② (생략)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법무·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분석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생략)

<신설>

제10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2. (현행과 같음)

3. 성별영향평가-----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제12조 (생략)

제13조(간사) ① (생략)

② 간사는 분석평가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4조 (생략)

제15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분석평가업무 소속 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제4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제5조에 따른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제16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원) 구청장은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기

제13조·제14조 (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

제15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성별영향평가업무 -----
-----.

제16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7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
---- 성별영향평가업무 -----
성별영향평가책임관-----.

② ----- 성별영향평가책임관-----.

1. (현행과 같음)
2. ----- 성별영향평가 -----
----- 성별영향평가서-----
3. ----- 성별영향평가결과-----
4. ----- 성별영향평가 -----

5. ----- 성별영향평가 -----

----- 성별영향평가-----

제18조(성별영향평가기관 지원) -----
----- 성별영향평가 -----

----- 성별영향평가기관-----

관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생략)

-----.

제19조 (현행 제17조와 같음)

【관 계 법 령】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3. 27.>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3. 27.>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